

소향씨어터 대관규약

제 1 장 총 칙

제 1 조 규약 목적

이 규약은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이하 "씨어터") 내 시설 및 부대설비 대여에 따른 원칙을 밝히고 이를 상호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연장 운영과 올바른 공연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대관이라 함은 대관자가 '공연', '연습', '녹음', '녹화' 등을 위하여 시설, 설비 및 부수 장비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차,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대관자라 함은 이 내규를 인정하고 씨어터와 대관 계약을 체결한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대관의 범위는 씨어터 내의 공연을 위한 기본시설, 부대 설비의 사용을 포함하며 각 내용은 별첨 조항에 명시되어 있다..

제 3 조 대관의 종류

대관의 종류는 대관 신청 시기, 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1. 대관 신청 시기에 따른 구분
 - ① 정기 대관: 매년 차기년도 개시 전 씨어터에서 정하는 시기 및 절차에 따라 접수된 공연에 대해 승인 후 확정, 통보 드립니다. 단, 차기년도 이후 시기의 대관은 씨어터와 별도 상의 할 수 있다.
 - ② 수시 대관 : 씨어터 기획공연과 정기 대관 일정을 제외한 잔여 일정 발생 시 씨어터가 정하는 시기 및 절차에 따라 신청을 받아 결정한다.
2. 대관 목적에 따른 구분
 - ① 공연 대관 : 씨어터의 기본시설 및 부대 설비를 대관 하여 실제 공연을 하기 위한 대관
 - ② 리허설 대관 : 공연 전 및 중에 리허설을 위한 대관
 - ③ 준비 대관 : 공연 전 무대 설치를 위한 대관
 - ④ 철수 대관 : 공연 후 사용 전 상태로의 전환을 위한 대관
 - ⑤ 녹음 대관 : 음반, 레코딩 작업을 위한 대관
 - ⑥ 촬영 대관 : 방송,CF, 영화 촬영을 위한 대관
 - ⑦ 리허설룸 대관 : 리허설룸의 본 공연 연습을 위한 사용 또는 독립적 사용을 위한 대관

제 2 장 대 관 료

제 1 조 대관료 산정

대관료는 매년 공연장 유지 및 관리 비용을 고려하여 정하며 사용료는 별첨 조항과 같다.

제 2 조 대관 계약금 및 잔금 납부

1. 대관자는 대관계약 체결 시 계약금으로 기본대관료의 30%를, 공연시작 60 일전까지 나머지 잔금을 씨어 터가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해야 한다.
(단, 수시 대관의 경우 계약금의 100%를 대관 계약일 7 일 이내 납부한다.)
2. 부대설비 사용료는 입장권 검인 또는 발행 전까지 납부해야 하며, 대관자의 불가피한 사정 발생 시 최소한 공연 1 일 전까지는 납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추가되는 부대설비 사용료는 공연 종료 후 3 일 이내 납부해야 한다.
3. 대관 일정 변경 및 연장 공연 등에 따라 변경 또는 추가되는 대관료의 경우 해당 공연 시작일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4. 대관자가 제반 대관사용료를 미납한 경우 또는 대관 보증금, 손해배상금 납입이 필요한 경우 씨어 터는 입장권판매대행금액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장권 판매대행금액 정산 시 해당 금액 공제 후 환불한다.
5. 씨어 터와 공동기획공연 또는 24 회 이상의 장기대관공연의 경우, 대관료 산정 및 납부 방식은 별도 협의에 따른다.

제 3 조 대관료 반환

다음 각 1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관자가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불가항력에 의하여 대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한 대관료에 대하여 100% 반환)
2. 씨어 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한 대관료에 대하여 100% 반환)
3. 부대설비 신청 후 사용 3 일 전 취소한 경우 (100% 반환)
4. 준비 및 철수 대관 시 사용 신청한 회수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 (미사용 회수 별 100% 반환)
단,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미사용 회수에 대해서는 대관료 반환 불가.

제 3 장 대관 신청 승인 및 계약

제 1 조 대관신청

대관신청인은 대관 신청 시 '공연장 대관신청서', '공연계획서' 를 제출해야 한다.

제 2 조 대관신청 제한

1. 법령 또는 사회적 통념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공연하려는 단체 또는 개인
2. 씨어 터의 시설이나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공연을 하려는 단체 또는 개인
3. 계약 체결 후 대관 취소 또는 작품 변경을 2 회 이상 한 단체
4. 대관료 미납 또는 체납된 단체 또는 개인
5. 특정한 종교나 정치의 홍보를 목적으로 공연하려는 단체 또는 개인
6. 기타 공연의 내용, 수준이 씨어 터가 수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단체 또는 개인

제 3 조 대관 승인 등

1. 대관신청 접수 후 써어터는 신청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대관 신청인에게 서면 [대관승인서, 대관불가통지서] 또는 유선으로 통보한다.
2. 써어터는 대관 승인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과 대관 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3. 대관 승인을 받은 자는 대관승인서에 명시된 일자까지 대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4. 대관자는 써어터가 요구하는 준비 및 철수 대관에 대한 최소한의 일정을 확보해야 하며, 이에 대관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관 승인을 취소될 수도 있다.

제 4 장 변경금지 및 계약해지

제 1 조 사용권 양도 및 전대금지

대관자는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단 계약체결 후 주최, 주관, 후원 등 불가피한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그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써어터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제 2 조 공연내용 임의변경금지 및 대관취소

1. 모든 공연 내용(공연명, 연주자, 공연내용, 주최자 등)은 승인 내용과 동일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운영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연대관취소의 경우 기 납입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연에 임박하여 대관 취소를 할 경우에는 다음 대관 시 제 9 조에 의거 대관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 3 조 대관일정 변경금지

1. 대관일정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단 타 공연과 상치되지 않고 써어터가 그 사유를 인정할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이 때 대관료는 수시대관요율이 적용된다.
2. 대관계약 후 또는 공연기간 중 발생하는 대관 취소분의 기납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 4 조 시설 및 설비 변경 금지

1. 대관자는 써어터의 시설 설비의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할 경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 완료 즉시 원상회복시키고 반입 설치한 설비를 철거 시켜야 하며, 이때의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한다. 대관자가 철거를 지연할 경우 써어터가 먼저 철거 또는 폐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한다. 단, 써어터가 철거 시 설치물의 손상, 파손 등에 대해서는 대관자는 일체 써어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며 써어터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거나 변상하지 않는다.
2. 대관자는 써어터의 시설물 철거 요청에 즉시 응해야 하며 철거요청 통지로부터 3일이내 즉시 철거 업무를 완료하여야 한다.
3. 대관자가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다음 대관등에 차질이 빚어질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써어터는 즉시 철거 또는 폐기한 후 대관자에 이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청구하며 대관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대관자는 공연장 객석, 로비 및 무대에 사전 협의 되지 않은, 공연과 관련 없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할 수 없다.

5. 대관자가 공연장 로비 및 기타 공간에 공연과 관련된 홍보, 판촉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씨어터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 조 대관의 신청 제한, 사용 취소등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취소,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관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씨어터는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대관승인 후 신청서 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 졌을 경우.
2. 양 당사자가 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3. 양 당사자가 정한 기일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운영사 승인 없이 과도한 교환권을 발행하여 지정 좌석을 초과한 경.
5. 공연장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한 경우.
6.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때.

제 6 조 계약의 해지

1.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문서로 계약 해지의 통지를 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① 본 계약의 각 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 ② 감독 관청에 의하여 영업 또는 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③ 파산, 화의 또는 회사정리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스스로 이를 신청한 경우
- ④ 제 3자로부터 가압류, 가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 ⑤ 위약 당사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 ⑥ 상대방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경우

2.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판매대금 및 수수료 등을 정산하기로 한다.

제 5 장 공연장 사용 및 안전관리 의무사항

제 1 조 홍보물 협의

1. 대관자는 대관홍보물의 게시 및 게시은 대관 승인 후 별도의 신청을 거쳐 운영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대관자는 운영사가 지정하는 장소 외에 포스터 등의 홍보물을 부착할 수 없다.

제 2 조 방송중계 협의

씨어터에서 하는 공연의 방송 녹음 또는 녹화의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해 관람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사는 필요 좌석의 판매를 유보할 수 있다.

제 3 조 관리의무 및 공연진행 준수사항

1.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씨어터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 하되, 특히 무대장치나 장치물의 경우 필히 방염을 하여야 하며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씨어터의 요청 시 대관자는 무대장치나 장치물 등

외부에서 반입된 장비에 대하여 방염 및 전기안전검사 등 각종 안전검사에 대한 승인을 얻었다는 필증 등을 제출하여야 무대장치나 장치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

2. 씨어터는 공연이나 행사 시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3. 대관자는 씨어터에서 정하는 공연장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야기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4. 대관자가 전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5. 대관자는 공연장 부속시설(열쇠, 분장실 집기, 비품 등)과 손 시 씨어터에서 정한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6. 대관자는 공연 개시일 전까지 씨어터가 요청하는 경우, 요구하는 수량의 (공연당 최소 10부) 포스터와 프로그램을 제출해야 한다.
7. 대관자는 공연장에 화환을 반입하는 경우, 공연 종료 시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철거비용 및 환경정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8. 씨어터는 대관기간 중(공연준비 및 마무리시간 포함)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할 당사자의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9. 대관자는 씨어터가 어떠한 제 3 자로부터도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10. 공연과 관계되는 판촉, 사인회, 리셉션은 씨어터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1. 상기 각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씨어터는 시설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4 조(입장제한)

씨어터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자에게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1. 타 관람객이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2. 만취자 및 무단 출입자
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 또는 동물을 휴대한 자
4. 검인이 없는 입장권을 소지한 자
5. 기타 안전 유지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6. 공연의 특성상 입장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한 미취학 아동

제 6 장 입장권 발행과 매표 및 수표관리

제 1 조 입장권의 발행

1. 대관 공연 및 행사에 대한 입장권은 시설의 좌석수의 범위 내에서 씨어터가 정한 서식에 따라 신청인이 발행한다.

2. 입장권을 좌석수 이상으로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좌석수 이상 교환권 발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지며 씨어터는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
3. 대관자는 판매대행사인 (주)인터파크를 이용하여 입장권을 발권하거나 판매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대행사를 이용할 경우 씨어터와 협의할 수 있다.
4. 대관자가 입장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입장권에 명기해야 한다.
 - 취학 전 어린이의 입장은 불가.
 - (* 단, 공연성격에 따라 연령제한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제한연령을 기재.)
 - 공연 전 입장을 원칙으로 하며 공연이 시작된 이후에는 안내원의 유도에 따라 입장 가능합니다.
 - 객석 내에서는 촬영 및 녹음 등 공연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되며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카메라, 촬영기기, 녹음기기 등과 음식물, 꽃다발, 애완동물은 객석 내 반입 금지.
 - 휴대용 전화기는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5. 운영사는 공연장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지정된 일부 좌석을 하우스티켓으로 유보 및 사용하며, 일반인에게 판매하지 않는다.
 - 총 10석 : 1층 C열 12~15번, 1층 J열 21~26번
6. 교환권 발행 시 대관자는 운영사와 반드시 사전 협의해야 한다.
7. 대관자는 입장권 판매 시 인터파크 회원, 동서학원(동서대학교, 경남정보대학교, 부산디지털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 신한카드 회원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추후 협의하여 결정 한다.

제 2 조 입장권의 대표 및 수표관리

1. 입장권 판매 시 고객의 편의와 원활한 티켓발권 서비스를 위하여 공연장에 입점 되어있는 티켓 운영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타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에는 야 당사자간 사전 협의할 수 있다.
2. 입장권 대표는 사용자 책임으로 하며 수표는 씨어터에서 전담한다.
3. 좌석권은 객석 수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
4. 씨어터에서 인정하지 않는 입장권의 발행으로 발생한 문제는 대관자가 책임을 지며, 씨어터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대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규약의 효력 및 적용시기

1. 본 규약은 계약 당사자간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2. 본 규약은 2016 년도 1 월 1 일 이후 공연을 위한 대관계약부터 적용되며, 매년 씨어터의 대관 목적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 2 조 규약 위반시 책임

1.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대관자의 귀책사유 또는 씨어터가 정한 안전수칙을 무시하여 발행한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대관자는 씨어터가 대관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어떠한 제 3 자로부터 청구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씨어터는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법률 비용을 포함한 제반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한다.

제 3 조 본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본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약의 해석에 관해서는 관계법령 또는 관례에 따른다.

제 4 조 관할법원

본 규약에 따른 분쟁은 씨어터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